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9월 1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사회) 제3차 위원회(1999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 가. 개정이유
 -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경제난 극복노력의 일환으로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을 시행하고 있는 바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여 부제에 대한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부제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부제위반 운행시의 주차요금 할증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1항과 관련 별표1, 비고 제10호)
 - 부제운행시의 주차요금 감면혜택 : 주차요금의 10% 할인
 - 부제운행 신고차량으로서 비운행일에 운행시의 제재근거 마련
 - 월정기권 이용차량 : 1회 주차요금 징수
 - 1회 주차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증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1항과 관련 별표1, 비고 제11호)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운행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제운행 참여유도
 -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노상·노외주차장에서 사전에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차량중 타시·도 등록자동차는 삭제(안 제6조제2항제1호)
 - 노상주차장 사용의 제한규정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으로 삭제(안 제9조)
 - 주차장법 제19조3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의무 규정 삭제(안 제17조)
 - 주차장법 제19조3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 신고의무 규정 삭제(안 제18조)
 -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내집주차장갓기운동'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기존의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에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게 되는 것과 아울러 IMF 이후 서민생활의 위축을 덜어주기 위하여 승용차 자율부제를 운행 장려하고 있는 바 부제운행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할인의 혜택을 주므로 부제운행 확대 참여 주민이 많도록 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과 관련한 별표1(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에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 제10호는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부제운행 준수식별을 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며 또 부제운행차량이 비운행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할증료를 적용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 제11호는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 감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이며

나.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를 제5조의 2로 하고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를 신설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1항3호에 의거 주택가 6m 미만의 도로에 재난구조차가 진입할 수 없어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제2항1호의 삭제는 조례 제6조2항1호에 타 시·도의 등록차량이 주차할 때 선불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일반에 적용하는 후불제를 균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라. 제9조(사용의 제한)의 삭제는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제1항제1호에 사용제한의 규정이 있으며 제2항에 조례 제9조의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며

마. 제17조(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와 제18조(부설주차장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의 삭제는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이 '99. 2. 8일 전문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우리구 조례규정의 법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바. 제25조(시행규칙)를 제27조로 하는 것은 조례 제5장(음차)에 있어서 차량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1주택 1주차 설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5조(보조의 대상)와 제26조(보조의 방법)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 신설 때문에 기존의 조례 제25조의 시행규칙을 제27조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5조(보조의 대상)의 보조대상은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지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26조(보조의 방법)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한 규정이며 이 보조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에 의거 주차장 설치에 근거하여 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	----

제출년월일 : 1999. 9.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경제난 극복노력의 일환으로 승용차 자율 부제운행을 시행하고 있는 바 부제운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여 부제에 대한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규제력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제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부제위반 운행시의 주차요금 할증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1항과 관련 별표1, 비고 제10호)
 - 부제운행시의 주차요금 감면혜택 : 주차요금의 10% 할인
 - 부제운행 신고차량으로서 비운행일에 운행시의 제재근거 마련
 - 월정기권 이용차량 : 1회 주차요금 징수
 - 1회 주차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증
- 나.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1항과 관련 별표1, 비고 제11호)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운행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제운행 참여 유도
- 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라. 노상·노외주차장에서 사전에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차량중 타시·도 등록자동차는 삭제(안 제6조2항1호)
- 마. 노상주차장 사용의 제한규정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으로 삭제(안 제9조)
- 바. 주차장법 제19조3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의 의무규정 삭제(안 제17조)
- 사. 주차장법 제19조3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 신고의무 규정삭제(안 제18조)
- 아.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 1] 의 비고 제10호,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구청장은 부제운행(차량운행일의 끝자리수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가 동일한 일자에 운행하지 않은 10부제와 일정일에 운행하지 않는 5부제·2부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의 할인을 받는 부제운행 자동차가 비운행(10부제를 기준으로 한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증한다.
11.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5장 “용자”를 “용자 및 보조”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

제26조(보조의 방법) 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안)
<p>제9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m 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적 1/1200 이상 일 것)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기간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8조(부설주차장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장 용차 <신설></p> <p><신설></p> <p>제25조 (시행규칙) 생략</p>	<p>제9조 <삭제></p> <p>제17조 <삭제></p> <p>제18조 <삭제></p> <p>제5장 용차 및 보조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p> <p>제26조(보조의 방법) ①보조금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7조 (현행과 같음)</p>